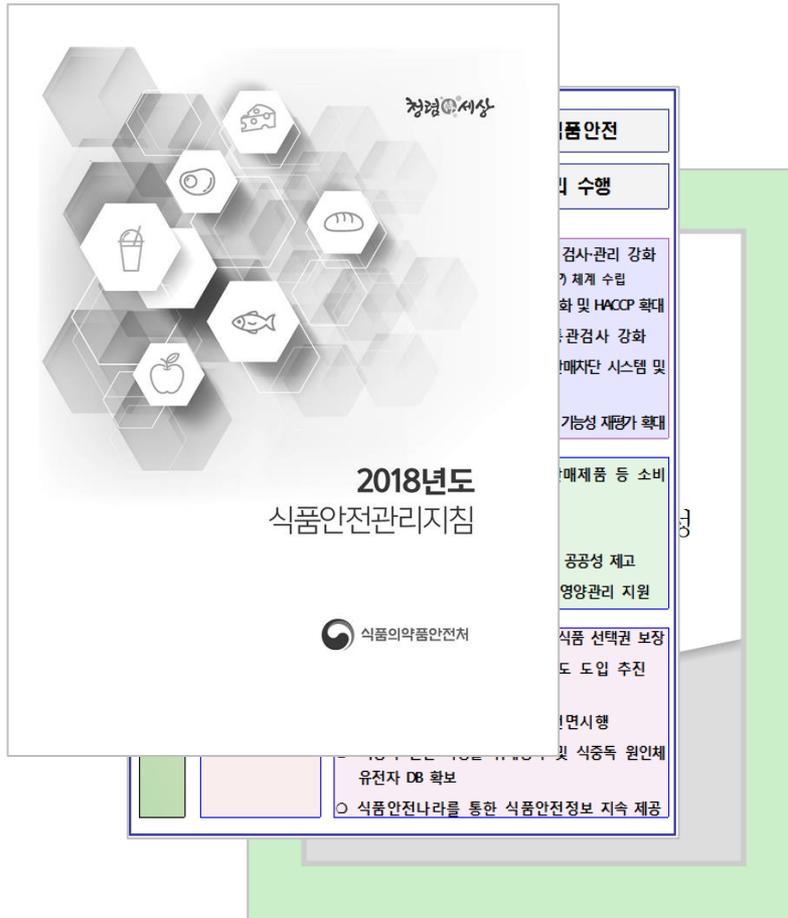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18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주요 사항)

# 들어가기 전에...



청림®세상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의 수행

검사관리 강화  
가 체계 수립  
화 및 HACCP 확대  
관검사 강화  
매자단 시스템 및  
가능성 재평가 확대

매제품 등 소비

공공성 제고  
영양관리 지원

식품 선택권 보장  
도 도입 추진

면시 행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매년 말일 ('18.12.28)

## ➤ 주요내용

- I.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 II.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III.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 IV. 건강기능식품관리
- V. 수입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 VI.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VII.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점검
- VIII.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 IX.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X.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록)

- 1)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 표시(기재) 지침
- 2) 품목제조보고 원재료 입력 요령
- 3) 홍성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들어가기 전에...

'17	'18	비고
I.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I.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II.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II.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III.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III.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5.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내용 증가 내용 증가
IV. 식중독 예방 및 관리	IV. 건강기능식품관리	
V. 수입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V. 수입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1.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등록 및 관리 2. 수입식품 등 사전 안전 관리 10. 수입식품등의 수거.검사 11. 수입식품 업체 지도.점검 관리 12.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 관리 13. 비정상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14. 허위.과대광고 관리 15. 지도.점검시 영업자별 교육.홍보 실시	내용 증가 내용 증가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VI. 건강기능식품관리	VI.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VI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VII.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점검	
VIII.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VIII.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IX.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점검	IX. 식중독 예방 및 관리	
X. 농수산물식품 안전관리	X.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Table of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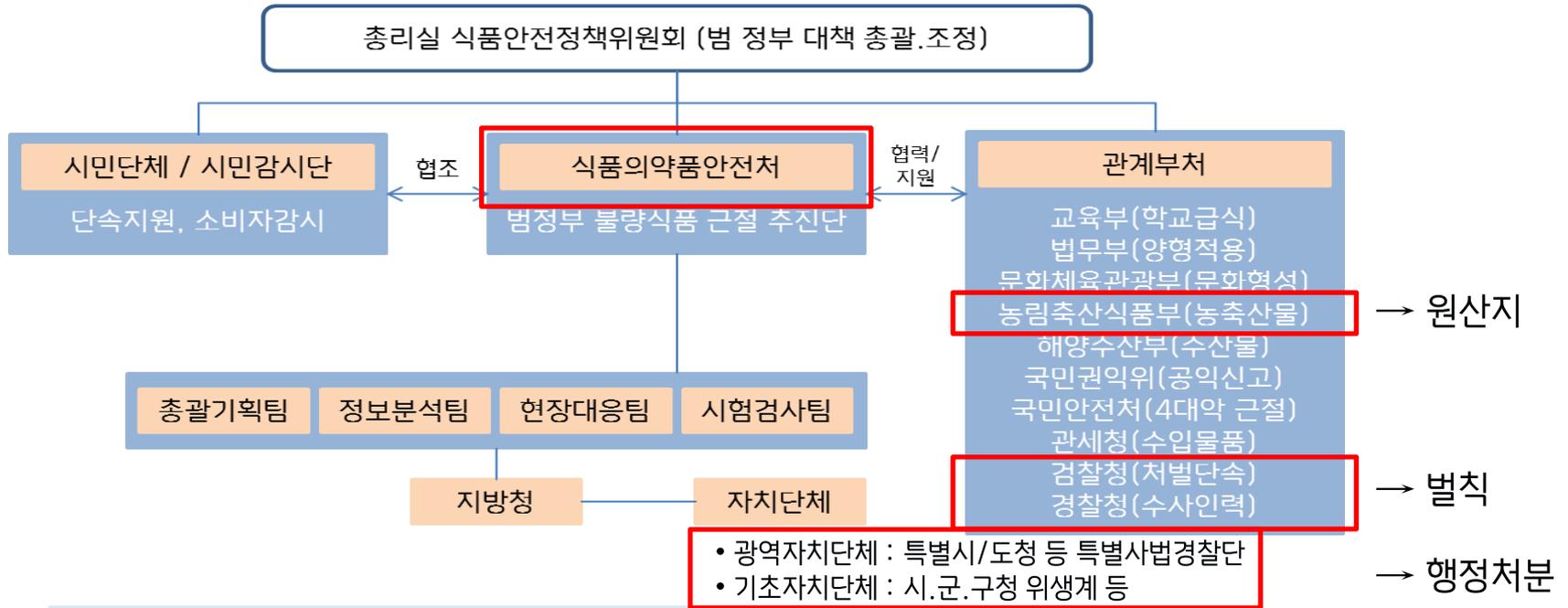
---

1. '18년 식품안전정책 추진 전략
2. 주요 법령 변화
3.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 1. '18년 식품안전정책 추진 전략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범정부 불량식품 대응 조직



- 경찰 :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 (수사전담반 편성)
- 검찰 : 식품의약품안전중점검찰청 (서부지검)
- 법원 : 식품보건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법)
- 적극적 규제입법 : 형량하한제, 부당이득환수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출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불량식품’ : 식품의 생산.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의 모든 식품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범정부 불량식품 대응 조직



### 식품안전 주요 NEWS

#### 2017년 하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 제점 검 했더니, 137개가 안전

-비위생적 제품 생산, 유통기한허위표시, 원산지거짓표시, 폐기용 식재료 불법 보관 등중요위반사항완전개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7년 하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138개소를 대상으로 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37개소의 위반 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8개 업소는 특사경이 2017년 하반기 실시한 김장철 김장재 및 찜닭 다소비식품, 영·유아 이유식 제조 판매 단속 등에 적발된 제점검 결과 대다수 업소들이 비위생적 제품 생산, 유통기한 허위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폐기용 식재료 불법 보관 등 단속 내용에 대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적발된 1개 업소 발 후에도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다 단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제적발 업소에 대해 폐쇄명령과 불법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판을 업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해당 시에 통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100% 완벽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해 나가겠다"면서 "식품범죄 재범률이 제로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100% 완벽해 질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해 나가겠다"면서 "식품범죄 재범률이 제로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2회에 걸쳐 1,835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20개 업소가 제점검에 적발돼 1.2%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3,021가지의  
토털 식품위생 솔루션

(출처 : 경기도청, 1월 3일)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주요 식품안전 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  
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  
전관리특별법

식품표시법

위생용품  
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진흥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기타 부처

상표,특허법  
(특허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계량에 관한  
법률  
(산자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위)

제조물책임법  
(공정위,법무부)

소비자기본법  
(공정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자부)

대외무역법  
(산자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자부,중기)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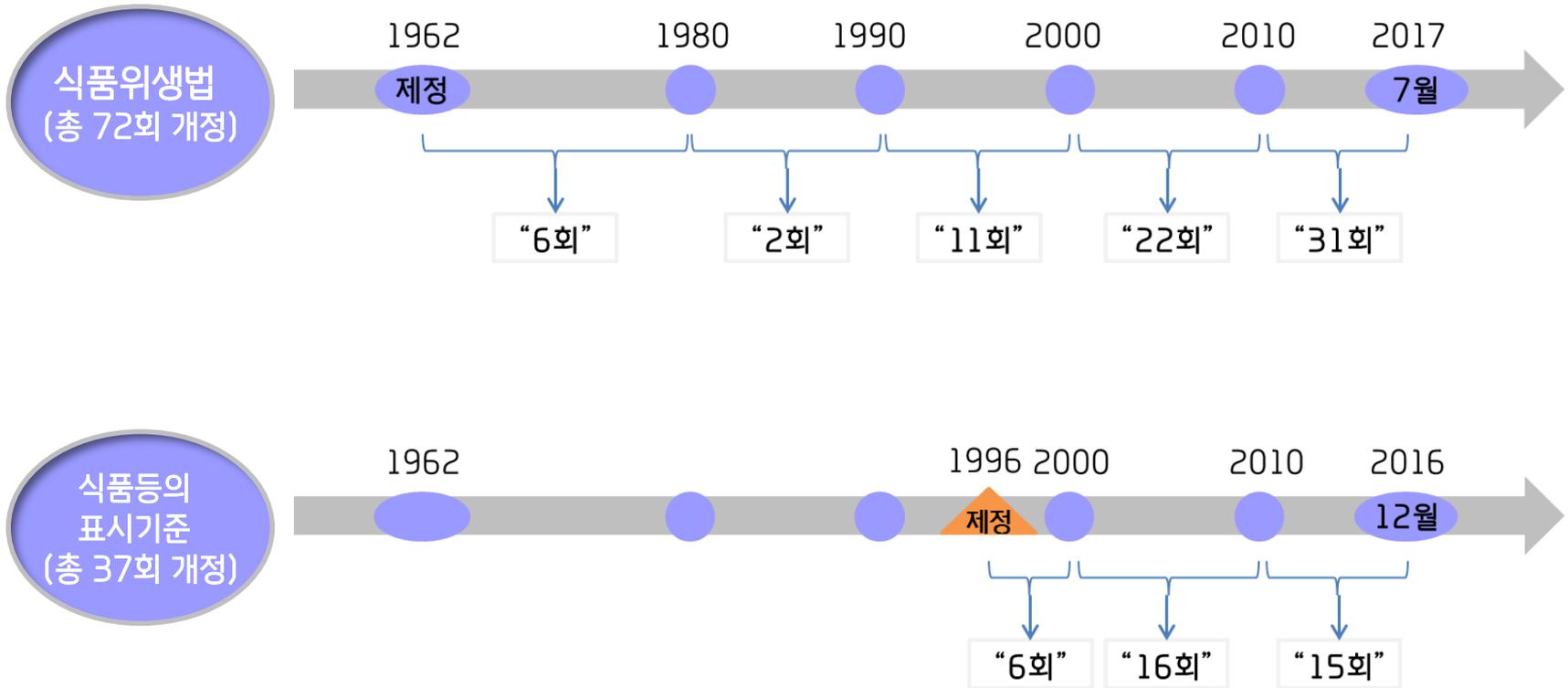
## 주요 식품안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주요 식품안전 법령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식품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

비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식품안전”

목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

핵심 전략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위해요인 검사·관리 강화  
\* 수산물·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
- 식품제조업체 사용 원료제품 관리 강화 및 HACCP 확대
-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및 통관검사 강화
- 유통업체 관리 강화,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및 이력추적대상 품목 확대
- GMO 등 식품표시 강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재평가 확대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 가정간편식, 배달앱, 온라인 판매제품 등 소비트렌드 반영 검사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급식의 공공성 제고
-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등 식품 선택권 보장
- 식품사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추진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표시 전면시행
- 식중독 원인 미생물 위해평가 및 식중독 원인체 유전자 DB 확보
-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식품안전정보 지속 제공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국민 알권리 강화

- 소비자가 제품의 정보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
-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확인된 ‘잣’을 표시 대상에 추가
-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해 ‘식품용’ 또는 ‘식품용 기구도안’ 표시 전면 시행

### 식용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트 등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 대규모 농장 등의 HACCP 인증 의무화

### 불량 수입업자 강력 퇴출 등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유통기한 변조 행위 및 중량을 변조할 목적으로 납.알.음.한천 등을 혼입시킨 경우 1회 위반시에도 영업등록 취소
- 원재료 거짓신고, 제조일자 허위 표시 등 허위 수입신고 처분기준 강화

### GMP적용 의무화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 '18년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GMP 적용 순차적 의무화
- 품목류별 연 매출액(2016년 이후) 1억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국회 지적 등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생산단계 관리 강화

- 닭·오리 농장 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 HACCP 인증.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리 항목 신설, HACCP 농장에 대한 불시평가 실시
-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및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 강화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식품 등 항생제, 잔류농약 검사 실시

### 제조단계 관리 강화

- 식품제조업체 사용, 압축공기 여과필터 관리 강화
  - 압축공기를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식품을 생산.제조하는 기계.기구류에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체 대상
- 질소 등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12.11.) 및 처분 기준 강화(영업소 폐쇄, 9.26. 입법예고)

### 유통단계 관리 강화

-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위생관리 강화
  - 햄버거 등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 강화

### 소비단계, 수입단계 관리 강화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소비자기만 허위.과대광고 제품 관리 강화
  - 탄산수를 탄산음료로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
- 해외직구, 휴대반입식품 등 비정상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 '18년 식품안전 정책 추진 전략 ”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등 식품 소비 트렌드 및 위해정보에 따라 주기적인 기획 검사 강화
- 제조업체 사용 원료성 농.축.수산물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우려 성분 검사 및 부적합 제품 추적조사
- 수산물 및 유제품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수립. 시행
-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 특별관리 실시

###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점검항목 1개 이상 위반시 수입중단 등 조치 및 수입신고 보류 조치(무검사 억류제) 도입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17.10)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위해우려 제품 통관 검사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설치.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급식안전관리 적극 지원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 체계, 집단급식소 납품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 2.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위생법 편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입법예고, '16.4.21)
- ❖ 식품공전 전면 개편 ('16.12.29, '18.1.1시행)
- ❖ 식품첨가물공전 전면 개편 ('16.4.29, '18.1.1시행)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면 개편 ('16.6.13, '18.1.1시행)
- ❖ 나트륨 비교표시 제정 ('15.5.18, '17.5.19시행)
- ❖ GMO 표시기준 개정 ('17.1.25, '17.2.4시행)
- ❖ 접객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7.2.20, '17.5.30시행)
  
- ❖ 식품표시법 제정 (입법예고, '16.4.21)
- ❖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17.4.18제정, '18.4.19시행)
  
- ❖ GMO 전면 표시 (국회 입법단계)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위생법 편제 (축산물위생관리법 입법예고, '16.4.21)

### 축산물위생관리법

- ‘가공’을 제외 법률안 입법예고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축산물가공품’ 제외
    - ①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② 알가공품(알함유가공품 제외)
    - ③ 유가공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폐지  
⇒ 유형명 및 기타 사항은 개정된 ‘식품공전’ 반영
- 기준·규격 외 표시기준, HACCP, 자가품질검사 등은 법시행 이전까지 종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름

### 식품위생법

- 기존 식품위생법 소관 식품군으로 변경되는 축산물가공품
  - 유음료 중 커피고형물 0.5%이상 → ‘음료류(커피류)’
  - 식용우지, 식용돈지 → ‘식용유지류’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빙과류’
  - 조제유류 → ‘특수용도식품’  
⇒ 식품위생법 소관 (영업등록 필요)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첨가물공전 전부개정 (‘16.4.29, ‘18.1.1시행)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L-글루타민산나트륨	L-글루탐산나트륨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스	L-아스파라긴	L-아스파라진
L-글루타민산	L-글루탐산	분말셀룰로오스	분말셀룰로스	아스파라기나아제	아스파라지나아제
L-글루타민산암모늄	L-글루탐산암모늄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미세섬유상셀룰로스	L-아스파르트산	L-아스파르산
L-글루타민산칼륨	L-글루탐산칼륨	삭카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에리쓰르빈산	에리토브산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L-글루탐산나트륨제제	삭카린나트륨제제	사카린나트륨제제	에리쓰르빈산나트륨	에리토브산나트륨
데카날	데칸알	D-소르비톨	D-소비톨	옥타논산에틸	옥탄산에틸
데카논산에틸	데칸산에틸	D-소르비톨액	D-소비톨액	카르민	카민
데카놀	데칸올	소르빈산	소브산	$\alpha$ -아세토락테이트디카복실라아제	$\alpha$ -아세토락테이트디카복실라아제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스	소르빈산칼륨	소브산칼륨	천연검	검레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소르빈산칼슘	소브산칼슘	G4생성효소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아디핀산	아디프산	말토트리오히드로라제	말토트리오히드로라아제
카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L-아르기닌	L-아르지닌	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L-아스코브산나트륨	천연착향료	천연향료
메틸에틸셀룰로오스	메틸에틸셀룰로스	아스코르빈산칼슘	L-아스코브산칼슘	합성착향료	합성향료
에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스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17.1.25, ‘17.2.4시행)

구분	이전	현행
표시 대상	•주요 원재료 (상위 배합 5가지)	➢ ‘모든 원재료’ 로 확대 (수입 옥수수, 대두)
알자 크기	•10포인트	➢ ‘12포인트’로 확대
광고	•신설	➢ 허용 - 대두, 옥수수를 50%이상 또는 1순위로 사용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가능 * 최종 제품의 비의도적 혼입치(3% 이내)는 인정 불가 - 유전자변형식품으로 개발, 승인 되지 않은 쌀, 바나나 등 제외
제외 대상	•신설	➢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재료에서 제외 - 제조시 일시적으로 사용되거나 극미량 사용시 -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 용도를 입증하는 제조업체 자료* 구비 * 제품 정보, 표시대상 원료 용도 등이 서류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용도	정의	비고
가공보조제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GM 미생물로 만든 효소제 등
부형제, 희석제	원재료(특정성분 또는 향료 등)를 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미량의 성분	사과향과 같이 기체의 향을 고정화시키는 용도

•비의도적 혼입치(3%)이하인 농산물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단, 구분유통증명서, <b>검사성적서</b> , 정부증명서 구비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 (동일) 단,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구비 ➢ (동일)
---	--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정 (식품위생법 제11조의2)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형태(예시)	세부분류별 비교 표준값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1,640 mg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짬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1,230 mg
냉면	국물형	물냉면	1,520 mg
	비국물형	비빔냉면	1,160 mg
유당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1,730 mg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1,140 mg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1,220 mg
	샌드위치	-	730 mg

유당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총 내용량(120cl)당 나트륨 1,790mg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1인분(458cl)당 나트륨 1,430mg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17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보고번호 표시 의무 신설 - 신규 품목 : '17.01.01부터, 기존 품목 : '18.01.01부터</li> </ul>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5-7('15.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해당 원재료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서 제외 (예시) “이 제품은 QQ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 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li> </ul>	II. 공통표시기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4-201('14.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정 - (기존)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 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 (추가)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li> </ul>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5-20('15.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 공전의 명칭만 사용하도록 조항 신설 - MSG 용어 사용 금지</li> </ul>	II.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5-77('15.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색 음료에 “00수”, “00물”, “00워터” 제품명 사용시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나. 18)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장의 고춧가루 함량 의무 표시 신설 - 고춧가루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나. 20) 장류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17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시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 활자크기를 <u>14포인트</u> 이상으로 확대 - 기존 : <u>12포인트</u> 이상</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가. 제품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5-20('15.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원료 우선 표시 조항 삭제 - (기존) 주원료의 원재료명 우선 표기 가능 조항 삭제 → (변경) 중량비율 2%이상인 경우 <u>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u></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바. 원재료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5-77('15.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명을 주표시면 표시시 해당 원재료명, 함량을 주표시면에 <u>12포인트</u> 이상 활자로 표시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소' 용어 변경 → (변경) '영양성분'</li> </ul>	-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18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과점영업(가맹사업의 직영점,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용기·포장에 제품명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표시대상에 추가</li> </ul>	I. 총칙 4. 표시대상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고시 2016-45('16.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표시면 :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li> <li>- 정보표시면 :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li> </ul> </li> <li>▶ 표시사항의 표시서식도안 제시</li> <li>▶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li> <li>▶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위탁생산(OEM) 표시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포인트 이상으로 주표시면에 원산지,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li> </ul> </li> <li>▶ 세트포장 판매 제품 표시 규정 신설</li> <li>▶ “천연” 표시 규정에서 천연첨가물 삭제</li> </ul>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시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해당 원재료명이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도 포함</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가.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레이징한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 표시 방법에 대한 표시 명확화</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마. 내용량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18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래 원재료의 성상이 변한 것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가공 공정 명칭 및 성상을 함께 표시하는 규정 신설 ( 예시 : ○○농축액, ○○발효액)</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바. 원재료명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고시 2016-45('16.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li> <li>-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li> <li>- 총 내용량이 100g(ml)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 초과 시 :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가능</li> <li>- 일정 중량 또는 용량 이상의 식품 중 봉지, 조각, 개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위 제품에 대하여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li> <li>- '1회 섭취참고량당' 등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단위도 규정</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아. 영양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룰로오스의 열량 산출 시 1g당 0kcal로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양성분 기준치 신설·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류 신설 : 100g</li> <li>-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math>\mu</math>g → 10<math>\mu</math>g), 크롬 하향(50<math>\mu</math>g → 30<math>\mu</math>g)</li> <li>- 영양성분표: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추가</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아. 영양성분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6-99('16.9.9))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고시일부터)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li> </ul> </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나. 16)다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6-145('16.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표시 허용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 허용</li> </ul> </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나. 19)특수의료용도등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나. 업소명 및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된 명칭은 함량을 합하여)에 따라 표시 가능</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바. 원재료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2016-149('16.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당류’ 함량강조 표시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100g당 5g 또는 식품 100mℓ당 2.5g 미만일 때</li> </ul> </li> <li>➤ ‘저소금(염)’, ‘무소금(염)’ 함량강조 표시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금(염) :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li> <li>- 무소금(염)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li> </ul> </li> <li>➤ ‘낮춘’, ‘줄인’ 비교강조 표시 기준 신설</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아. 영양성분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용어 정의 개정 -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li> <li>➢ ‘제조일’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li> <li>➢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li> <li>➢ ‘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li> <li>➢ ‘복합원재료’ 정의 개정 -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li> </ul>	I. 총칙 3. 용어의 정의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원칙 신설 - 소비자가 한글표시사항을 읽을 때 한글표시사항 이외의 도안, 그림, 사진, 문구, 색상 등에 의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됨</li> </ul>	I. 총칙 5. 표시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씨(아마씨유 제외) 원재료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신설 -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li> </ul>	II. 공통표시기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준 신설</li> </ul>	II.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금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미씨(아마씨유 제외) 원재료로 사용시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 조항 신설</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멸균제품”, 비살균제품은 “비살균제품”으로 조항 개정</li> </ul> </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임식품, 조림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살균, 멸균 공정 제품에 한하여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탄올 함량을 알코올 함량으로도 표시 가능</li> <li>- 원재료명 중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명 중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 가능</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꿀류(사양벌꿀, 사양벌집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 표시 조항 신설</li> </ul> </li> </ul>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소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unit/g) 표시 의무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의 업소명 표시규정 분리</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나. 업소명 및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원재료 표시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식품유형을 표시</li> <li>- 5%미만에 해당하거나 복합원재료의 복합원재료는 명칭(제품명 포함) 또는 식품유형만을 표시 가능</li> </ul> </li> <li>➢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 → 고시된 혼합제제류의 명칭</li> <li>➢ 천연향료, 합성향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li> <li>-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바. 원재료명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 살균/살충', '감마선 발아억제/살균/살충', '전자선 발아억제/살균/살충' 표시 허용</li> </ul> </li> </ul>	별지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2017-99('1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글자크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량, 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규정 신설</li> </ul> </li> </ul>	도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_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시행일 : '18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 표시 규정 개정.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 규정에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주어되어 있는 경우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li> <li>-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을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li> </ul> </li> </ul>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2016-701('16.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시 해동방법 표시의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표시</li> </ul> </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과정을 거치는 차의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 신설</li> </ul> </li> </ul>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상차(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제품명으로 '00수' 허용</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_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li> <li>- 수입식품은 정보표시면에 표시 가능</li> </ul> </li> </ul>	II .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2017-363('17.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 면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추가 : 잣</li> <li>-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별도 표시 생략 가능</li> </ul> </li> </ul>	II . 공통표시기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체질소, 액체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의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액을 환원시 식품첨가물 사용 제품에 100%를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 표시</li> <li>- 예시) 100%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 조절제 포함)</li> </ul> </li> </ul>	II .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등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의 것 이외의 상표, 로고 등 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식품 및 자연상태 식품 제외</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_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은 뿌리 이외의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그 부위의 명칭을 표시하고, 2가지 이상의 부위를 함께 사용한 경우 각각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li> </ul>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가. 식품별 외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2017-363('17.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산성(pH 3.0 미만)의 캔디류 :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무 신설</li> </ul> </li> </ul>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류(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 함량 표시의무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상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사항 개정</li> <li>-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임업인·수산업 및 생산자단체의 기준 또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채취·생산한 농·임·수산물은 한글표시 생략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칭명칭 표시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가지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이상되어야 하는 기준 삭제</li> <li>- 예시) 과일00(사과 00%, 배00% 등)</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제품명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식품등의 표시기준 \_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시행일 : '20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 함량표시 제외 가능</li> <li>- 예시) “○○토마토케첩”(식품유형: 토마토케첩)</li> <li>- 예시) “○○햄버거”, “○○김밥”, “○○순대”</li> <li>- 예시) “수정과○○”, “식혜○○”, “불고기○○”, “피자○○”</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 가. 제품명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2017-363('17.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안, 그림, 사진, 문구 사용시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함량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제외</li> </ul> </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바. 원재료명 사. 성분명 및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제조 기구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 표시 허용</li> </ul>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용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원산지 표시법

주요 내용 (시행일 : '17년 1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신설 (제조업,接客업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매체 : 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라디오 등</li> <li>- 인쇄매체 : 신문, 잡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li>❖ 농림축산식품부령 198호, 해양수산부령 185('16.02.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원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표시 → (변경) 3순위까지 표시</li> <li>- (신설) 1, 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 원산지 표시</li> <li>- (신설) 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 : 고춧가루 제외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의 원료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li> </ul> </li> </ul>	제3조(원산지 표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 대통령령 26941 ('16.02.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li> <li>- 조리용도 구분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해 표시</li> <li>- 음식점의 원산지 게시판 : 게시판 옆, 아래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게시</li> <li>- 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 포함) : 메뉴명,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주요 개정 법령

### ❖ 원산지 표시법

주요 내용 (시행일 : '17년 7월 1일~)	관련 조항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변경되는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외국산’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내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최근 1년간 3개국 변경된 경우 또는 신제품으로 최초 생산일 1년내 연평균 3개국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b>“외국산[국가명, 국가명, 국가명 등]”, “외국산(변경 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b></li> <li>-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내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 된 경우 또는 정부가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의 표시대상 원료 원산지가 3년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b>“외국산”</b></li> </ul> </li> </ul>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 개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6-26 ('16.0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 확대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등)</li> <li>- 수산물가공품 : 건강기능식품 13개 품목 확대 (식이섬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스쿠알렌 등)</li> </ul> </li> </ul>	별표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3. 농산물가공품 별표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 3. 수산물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종균을 배지에 접종하여 수입, 국내에서 버섯 생산시 표시 요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국내산) → 버섯(국내산, 접종·배양: ○○국)</li> </ul> </li> </ul>	별표3. 이식, 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 “ 주요 법령 변화 ”

##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식품위생법	제2조	'17.4.18 ( '18.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li> </ul>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17.12.12 ( '19.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함.</li> <li>- 복어독이 제거가 필요 없는 복어만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일반 조리사 고용 의무도 없음</li> </ul>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li> <li>-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모든 즉석섭취식품</li> <li>- 즉석조리식품, 씨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 추가</li> </ul>
	제42조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군사시설 내 허용영업 확대</li> <li>-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li> </ul>
	제52조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li> <li>-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영업자가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면제대상이나,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도 신규 위생교육 면제</li> </ul>
	별표14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가공업)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즉석판매제조가공업) 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②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는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식품접객업) ①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장소의 영업장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게 함 ②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발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④ 그 밖에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는 지자체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별표15의2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li> </ul>
	별표23	'18.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기준 신설 : ①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영업등록취소, 폐쇄 등 처분 기준 신설</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법		17.10.24 (18.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li> <li>•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 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li> <li>•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li> <li>•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li> <li>•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해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함</li> </ul>
		17.3.7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함</li> <li>•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화함</li> <li>• 벌칙 수준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벌금의 금액기준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li> <li>• 축산물 관련 영업의 신고 또는 허가의 직권말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li> </ul>
		17.9.29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식약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조사, 심의 실시함)을 명확히 함</li> <li>•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함</li> <li>• 영업신고 수리 간주(看做)제 도입</li> <li>•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평가와 자료제출 및 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함</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17.3.7 (1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된 식용란(OEM, PB 제품) 유통자도 해당 제품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수집 · 포장한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li> <li>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벌크(300개 이상 단위)로 포장된 식용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음</li> <li>위생교육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 영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 신규 교육을 생략함</li> <li>가공업(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동일 공정 사용 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함</li> <li>자동화시설된 보관업은 조명시설 준수 예외 인정함</li> <li>1인1차량 운반업은 자신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li> <li>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 착용의무 예외함</li> <li>시설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도축업 · 집유업 처분기준 신설함</li> <li>종업원 없이 영업자만 영업을 하는 HACCP업체의 정기교육 완화 대상을 확대함 - (현행) 축산물운반업 · 식육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개정)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li> <li>1차 위반 시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생산연월일 · 유통기한 변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 -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 주입 -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 - 사료용 ·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 · 처리 · 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 - 자가 검사나,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 · 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 - 시설개선 명령 또는 축산물 회수 ·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li> <li>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도 허용함</li> <li>회수명령 대상도 별표14의3 기준에 따르도록 정함</li> <li>검거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li> <li>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 용수는 검사대상으로 규정함</li> <li>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함</li> <li>이력번호 기재 대상에 돼지고기를 추가함</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17.3.7 (1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합 식용란의 폐기내역 기록을 의무화함</li> </ul>
		17.3.7 (1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부적합 식용란(부패, 곰팡이, 난각 손상 등) 판매금지 삭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준수함)</li> <li>부적합식용란 판매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1차))</li> <li>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식육부산물 종류 외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표시의무로 추가함</li> </ul>
		17.11.17 (17.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 등록을 추가 신청한 경우 현지 방문을 생략할 수 있음</li> <li>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를 마련함(이동식 도축장 허용)</li> <li>식육 또는 포장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전기 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li> <li>식용란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냉방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li> <li>「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도축검사증명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휴대 의무를 제외함</li> <li>먹는물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li> <li>원료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노력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도 행정처분을 경감함</li> <li>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표시의무를 삭제(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축산물 표시대상으로 관리함)</li> <li>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의무를 생략함</li> <li>회수대상 식중독균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식중독균과 동일하게 규정함</li> <li>행정처분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정함</li> <li>허가 민원처리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단축함</li> </ul>
		17.12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가공품 HACCP 적용을 의무화함</li> <li>원유의 잔류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li> <li>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에 영문증명서를 마련함</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제26조	'17.2.22 ( '17.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자 구분관리를 현행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li> <li>•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특별관리영업자로 추가</li> </ul>
	별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금지 및 이를 위반시 One-Strike out 적용</li> </ul>
	별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하는 행위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를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 회 실시</li> <li>• 표시기준 위반 등 경미한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후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회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li> <li>•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농.임산물과 동일사 . 동일 농.임산물의 조건이 같아 이미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동일 농.임산물에 대한 처리방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부적합 처리 조치</li> </ul> </li> </ul>
	별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유효기간(5년) 설정</li> <li>• 포도주의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 마련(빈티지 및 알코올 도수 다른 경우도 동일사 동일제품 인정)</li> </ul>
	별표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처분 경감 대상 중 수입만 하고 유통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토록 개선</li> <li>•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 제조일자 허위표시,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처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강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별표2	'17.1.31 ( '1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인의 직무수행 내역 기록.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 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규정</li> </ul> </li> <li>• 판매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규정</li> </ul> </li> </ul>
시행규칙	제8조	'17.4.7 ( '1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품질관리실이 있는 GMP 기준 준수업체에 한해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규정</li> </ul> </li> </ul>
	(제16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인 직무수행 내역 등 기록.보관 의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인은 법에 따라 수행한 직무 수행 일자.내용.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li> </ul> </li> </ul>
	제18,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 교육시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전문판매업 신규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정비</li> </ul> </li> </ul>
	제20조의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규격,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신청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규격, 원료 또는 성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추가 규정</li> </ul> </li> </ul>
	제25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 검사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별.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진위(眞僞)검사 및 혼입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li> </ul> </li> </ul>
	제29조의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규정</li> </ul> </li> </ul>
	제25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명령 이행 기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규정</li> </ul> </li> </ul>

# “ 주요 법령 변화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구분	조항	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시행규칙	별표1	'17.4.7 (1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화장품, 축산물가공업, 계열사 연구소,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추가 규정</li> </ul> </li> </ul>
	별표4, 별표12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문제발생 시 등 자진 회수 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판매.일반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준수사항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규정</li> </ul> </li> </ul>
	별표9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장 멸실 등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장 멸실.시설 철거 등으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준 신설</li> <li>-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위반시 처분 신설</li> <li>- 원재료 진위 검사의무 위반 시 처분 신설</li> <l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 위반 시 처분 신설</li> <li>- 이물검출시 세부 처분 신설</li> <li>-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 유발 원료에 대한 처분 신설</li> </ul> </li> <li>행정처분 경감대상에 과징금 부과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위반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기준에 따라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li> </ul> </li> <li>생산 및 작업기록 등 허위 작성 시 과태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작업기록 및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과태료 100만원 규정</li> </ul> </li> <li>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록 처리기간 등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처리기간 및 변경 처리기간을 단축</li> </ul> </li> <li>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지정 등 관련 규정 삭제(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별표 8, 9, 별표 11 및 별지 제34호부터 별지 제36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서 제22조제3항부터 7항까지가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동 법률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은 모두 삭제</li> <li>- 다만, 그 시행은 법률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시행됨</li> </ul> </li> </ul>

### 3.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내용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식품 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 특이 사항

-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구 :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 대상이 아님. 기구와 용기·포장의 정의를 활용하여 영업신고 대상 여부 확인(용기류 제외)
  - 기구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
  - 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토굴 등) 등 영업시설 관리
  - 건축물,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이 기존의 영업장과 일체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동일한 영업장으로 봄
  - 옥내에 두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에 설치한 수족관, 장독대, 가마솥, 젓갈숙성장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 위탁급식은 집단급식소에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업종이지만, 집단급식소는 음식류를 공급하는 시설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음
  - 집단급식소는 영리로 하지 않으면서, 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규정된 급식시설로 정의가 가능하므로 동 개념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여부 판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영업 가능 범위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급식의 특징,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 미보고시 품목별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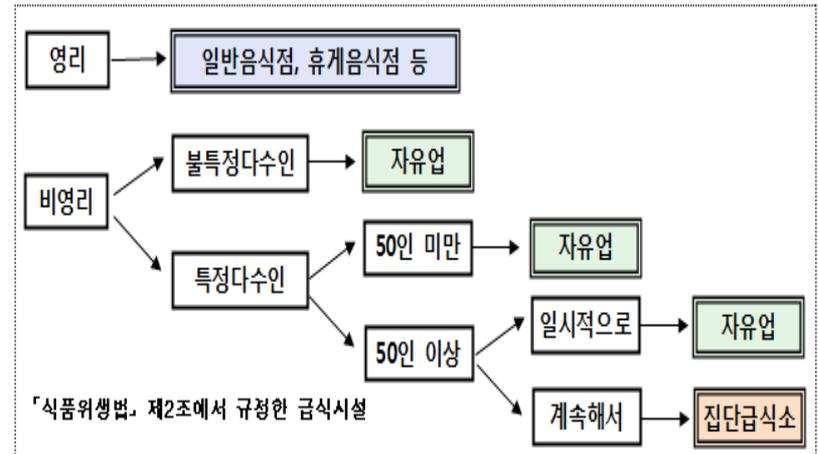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식품 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 ※ 기구와 용기·포장의 구분

기구	용기·포장
공기, 대접, 접시, 수저, 포크, 물통, 도마, 가위, 칼, 국자, 주걱, 뒤지개, 강판, 거품기, 채칼, 계량스푼, 주전자, 냄비, 코펠, 절구, 고기불판, 김발, 병틀, 얼음틀, 후라이팬, 전기튀김기, 믹서기, 커피머신, 분쇄기, 분유케이스, 젓병, 야채탈수기, 여과지, 장갑, 일회용 장갑, 등	두유·우유·주스팩, 과자등포장지, 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 햄버거포장지, 레토르트파우치, 피자박스, 케익박스, 유통용도시락용기, 소세지케이싱, 치즈필름, 순두부포장지, 캔, 화과자등 용기, 초밥용기, 샌드위치포장, 포장용 죽용기 등
	

### ※ 집단급식소의 신고대상 판단기준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리

### 특이 사항

#### • 자가품질검사 점검 체크리스트

-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른 이행 여부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의 유통 및 재사용 여부
-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 관할 기관 보고 여부
-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류 등 보유 여부
- 검사성적서 허위작성 여부 확인 : 실제 검사 여부, 시험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 검사관련 기록 위·변조, 다른 제품의 검사 결과 인용 등
- 검사관련 장부 작성 및 보관 여부 확인(검사일시 기재, 검사 실시대장·검사 일지·시약 장부대장 작성, 장비 사용·점검·유지 보수 일지, 초자 구입대장 등 구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검사하는지 여부 : 표준물질 사용 여부, 미생물 배양시간 준수, 필요시 확인시험 및 공시험 여부, 유효기간 경과 표준물질 사용, 판정이 모호한 피크(Peak) 확인검사 등
- 회수·폐기 대상식품의 적정 처리 여부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 특정 식품첨가물의 검사항목 생략시 그 사실 확인

#### • 점검 방법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또는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
  - 연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별도관리
  - 회수·폐기 대상이 아닌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 지도. 점검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 특이 사항

#### • 지정업체 신고 등 관리

- 의약품 또는 의약품제조시설(단,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식약처에서 공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시설기준 특례규정을 적용

#### • 지정업체 사후관리

- 의약품 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할 경우 반드시 “식품제조중”이라는 표시
-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 자체에서 설정한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세척 또는 소독과 관련한 기록서는 3년간 보관
- 의약품 또는 의약품 제조 후 식품을 제조·가공시마다 전이 우려가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 성분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검사기록서는 3년간 보관
- 지정업체가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실시(이 경우 의약품의 전이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

-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과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고발 조치
- 지정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경우라도 의약품 또는 의약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전이된 성분에 따라 행정처분 조항 검토)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식품HACCP 제도 운영

### 특이 사항

- 가공품 유형 통합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개정  
·공포 예정('18.1월)
- HACCP 인증 확대 지속추진
  - 어린이보호식품 등 8개 식품 3단계(1억 ↑ & 6명 ↑) 차질 없는 의무적용('18.12 시행)
  - '17년도 총 매출액 100억이상 제조업체 전체 생산식품 의무 적용('18.1 시행)
    - \*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사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유예 가능(신청:인증원)
  - HACCP의무 대상('17.12 시행) 유예 및 연장심사 유예업체 관리
  -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업체 재정지원(시설개선비, 컨설팅비) 지정업체 사후관리
- 자체평가 대상업체 관리
  - 자체평가 대상업체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개선조치까지 총괄하는 자체평가프로그램을 운영
  - 자체평가 일정, 범위, 평가자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에 개선, 확인
  - 자체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해썬(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3년주기) 시행 : 대상 - '13.8.4 ~ '13.12.31인증업체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정기평가 면제 취소 및 수시평가 실시
  - \* 수시·기획 불시평가 비율 확대('18년 목표 40%) 및 법령 위반 영업자 교육 실시
  - \* 수거검사 부적합(식중독균 검출 등) 등 위해 수준이 높은 경우 즉시 불시평가를 실시하고 경미한 표시사항 위반 등은 불시평가에서 제외 (범위 : 이전 평가일 이후 ~ 현재 평가일까지)
  - 평가결과 60점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시 즉시 인증취소
  - \* ①원부재료검사검수 미흡, ②지하수살균소독 미흡, ③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④CCP공정 관리미흡
- HACCP업체 압축공기 관리
  - 식품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압축공기 등은 청결해야 하며,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 주요 관리 항목 : 압축공기로 인한 세균, 오일 등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① 필터관리, ② 유지보수, ③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경우 식품등급 윤활유 사용 여부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축산물HACCP 제도 운영

### 특이 사항

- 의무적용 확대 지속 추진
  - 식육가공업('18 ~ '24), 식용란선별포장업('18.4.25 시행)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추진
  - \* 식용란선별포장업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시행 6월 이내)
  - 소규모(5억미만 또는 21명미만) 식육가공업 재정지원(시설개설편비)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불시평가 도입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18.12)
- 자체평가 대상업체 관리
  - 자체평가 대상업체는 평가계획 수립부터 개선조치까지 총괄하는 자체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자체평가 일정, 범위, 평가자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에 개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프로그램 및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평가 기관에서 조사.평가 시 확인

- HACCP업체 압축공기 관리
  - 식품취급 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압축공기 등은 청결해야 하며,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 주요 관리 항목 : 압축공기로 인한 세균, 오일 등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① 필터관리, ② 유지보수, ③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경우 식품등급 윤활유 사용 여부
- 닭·오리 농장 HACCP 인증업체 관리 강화
  - \* HACCP 인증.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리 항목 신설, HACCP 농장에 대한 불시평가 실시(당해연도 평가업체 중 5% 실시, 농식품부)
- 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
  - HACCP 적용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만 학교급식토록 제한
  - HACCP 적용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 HACCP 적용업체 인증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완화
  - HACCP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투자시 투자액의 3% ~ 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 축산물HACCP 제도 운영

### ❖ 축산물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등 관리 체계

구분	인증	사후관리	행정처분
축산물 HACCP	(의무) HACCP 충족요건으로 자치 단체에서 인허가시 확인	(의무) 지방청 검역본부	(의무) 시도지사
	(자율) 인증원	(자율) 인증원	(자율) 지방청 검역본부

\* 의무업종 :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17.12 개정 예정)

\* 도축업, 집유업, 농장HACCP인증 등 업무를 농식품부에 위탁하였음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18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안심 환경 제공 ”

#### 전략

### “ 위생취약 및 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중심의 점검 강화 ”

#### 주요 점검분야 및 항목

**[ 기획점검 ]**  
 소비변화에 따른 식품사고 파급력이 큰 분야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 위생적취급기준, 온도관리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자가품질검사, 유통기한 위.변조 등
- ▶ 프랜차이즈점.패스트푸드점  
 : 부적합 원료, 조리장 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유통기한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 ▶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업체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유통, 회수명령 위반 여부 등
- ▶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체  
 :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비식용 원료 사용 등

**[ 특별점검 ]**  
 사회적 이슈, 위생 취약 우려시설 등

-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 원료 등
- ▶ 노인.장애인.아동.산모 이용시설  
 :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 ▶ 애견동물카페  
 : 시설기준, 위생적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원료
- ▶ 반복민원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 법령 재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 ▶ 농수산물 단순가공 업체  
 : 작업장 바닥 전처리,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처리
- ▶ 원료성 농산물  
 : 백수오, 고추 등 생산.재배단계

**[ 정기점검 ]**  
 계절별 특정시기 사전 안전관리

- ▶ 설.추석 명절  
 :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햇과일, 쇠고기, 조기 등)
- ▶ 봄.가을 신학기  
 : 학교집단급식소,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
- ▶ 봄.가을 행사철 및 하절기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열, 공항, 국.공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등
- ▶ 어린이날.발렌타인데이  
 :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어묵, 떡볶이, 꼬치류 등
- ▶ 크리스마스.연말연시  
 : 케이크류, 빵류, 초콜릿류 등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18년 식품안전관리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소비자 위해 항목 및 기만행위 항목 위주 집중 점검
  -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 의약품, 사료용, 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 영업정기 기간 중 영업 및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 질병치료, 의약품 오인, 체험사례 등 허위 광고 행위
- 지자체 관내 일상점검 : 기본안전수칙 항목 위주 점검
  -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지하수사용 수질검사
  - 방충, 방서시설 기준
  -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 자가품질검사
  - 이물 혼입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판매, 조리, 보관, 냉장, 냉동
  - 온도기준 미준수
  -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 음식물 재사용

- 사전예고제 실시 : 2주 이전에 인터넷, 문자, 일간지 등
- 위반사항 발생시
  - 위반사항은 시정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 실시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 공개
  - 반드시 3개월 이내 재점검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특별 관리
  - 위반된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인 경우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중 계통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업체 및 제품 정보 등을 신속히 통보
- 할랄 표시, 광고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인증 또는 보증의 표시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
  -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민간 또는 외국 정부 인증에 대한 표시, 광고 허용
- 액체질소(용가리과자) 등 인체 위해우려 첨가물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식품취급시설 점검 시 액체질소가 잔류되거나 주류 등에 드라이아이스 등 사용행위에 대한 점검 실시
-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통보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1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2.28 ~ 01.04
	○ 설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01.25 ~ 02.02
2	○ 발렌타이데이 대비 점검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02.05 ~ 02.0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1차)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02.07 ~ 02.09
	○ 영유아식 표방(표시.광고) 제조.판매업체 점검	이유식, 영유아곡류조제식 등	02.19 ~ 02.21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1차)	절임배추, 꽃감, 과메기, 멸치 등	02.22 ~ 02.28
3	○ 봄 신학기 합동점검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03.02 ~ 03.12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업체 점검	과자류, 김치류 등 식품제조업체 / 인삼, 비타민 등 건기식제조업체(1차)	03.05 ~ 03.09
	○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 트럭 등 조리.판매	03.19 ~ 03.23
	○ 검사명령제 이행여부 등 위반업체 점검	검사명령제 대상업체, 수질검사 부적합 업체 등	03.19 ~ 03.23
	○ 수산물 인위적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시세차익을 노린 냉동수산물 얼음막(글레이징)	03.26 ~ 04.03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4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 교차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04.02 ~ 04.06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1차)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04.02 ~ 04.06
	○ 탁주 제조업체 점검		04.09 ~ 04.13
	○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집단급식소(청소년수련원 시설), 김밥, 도시락제조업체 등	04.09 ~ 04.17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수거검사		04.16 ~ 04.24
	○ 가정의달 건강기능식품제조·유통업체 합동점검	인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소제품 등	04.16 ~ 04.20
	○ 가정의달 뷔페업소 등 식품접객업체 점검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음식점 등	04.23 ~ 04.27
	○ 어린이날 합동 점검	학교 매점 등 조리·판매업체	04.23 ~ 04.30
5	○ 음료류 제조업체 허위표시 및 광고 점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음료 제조·판매업체 등	05.08 ~ 05.11
	○ 주류원료인 주정 제조업체 점검		05.09 ~ 05.11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1차)	김치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05.14 ~ 05.18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1차)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05.14 ~ 05.23
6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06.04 ~ 06.11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아이스크림, 햄, 소시지 등 즉석섭취가공품 등	06.07 ~ 06.15
	○ 프랜차이즈 원료 제조업체 점검	빵류, 면류, 식용유지류, 조미식품(소스류 등) 등	06.11 ~ 06.20
	○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점검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야생동물카페 등	06.18 ~ 06.22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7	○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합동 교차점검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커피.주스 프랜차이즈 등	07.02 ~ 07.10
	○ 생과일주스 전문 조리.판매업체 점검	부패.변질된 원료(곰팡이 핀 과일 등) 사용, 믹서기 위생적 관리(세척.살균)	07.16 ~ 07.20
	○ 하절기 맥주(소규모 맥주 포함) 제조업체 점검	맥주제조업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	07.23 ~ 07.27
8	○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 점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08.06 ~ 08.10
	○ 가을 신학기 식재료판매업체 및 조리.판매업체 합동점검	학교 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08.20 ~ 08.28
	○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08.27 ~ 09.04
9	○ 추석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체	09.03 ~ 09.11
	○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교차 점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푸드트럭 등 조리.판매	09.13 ~ 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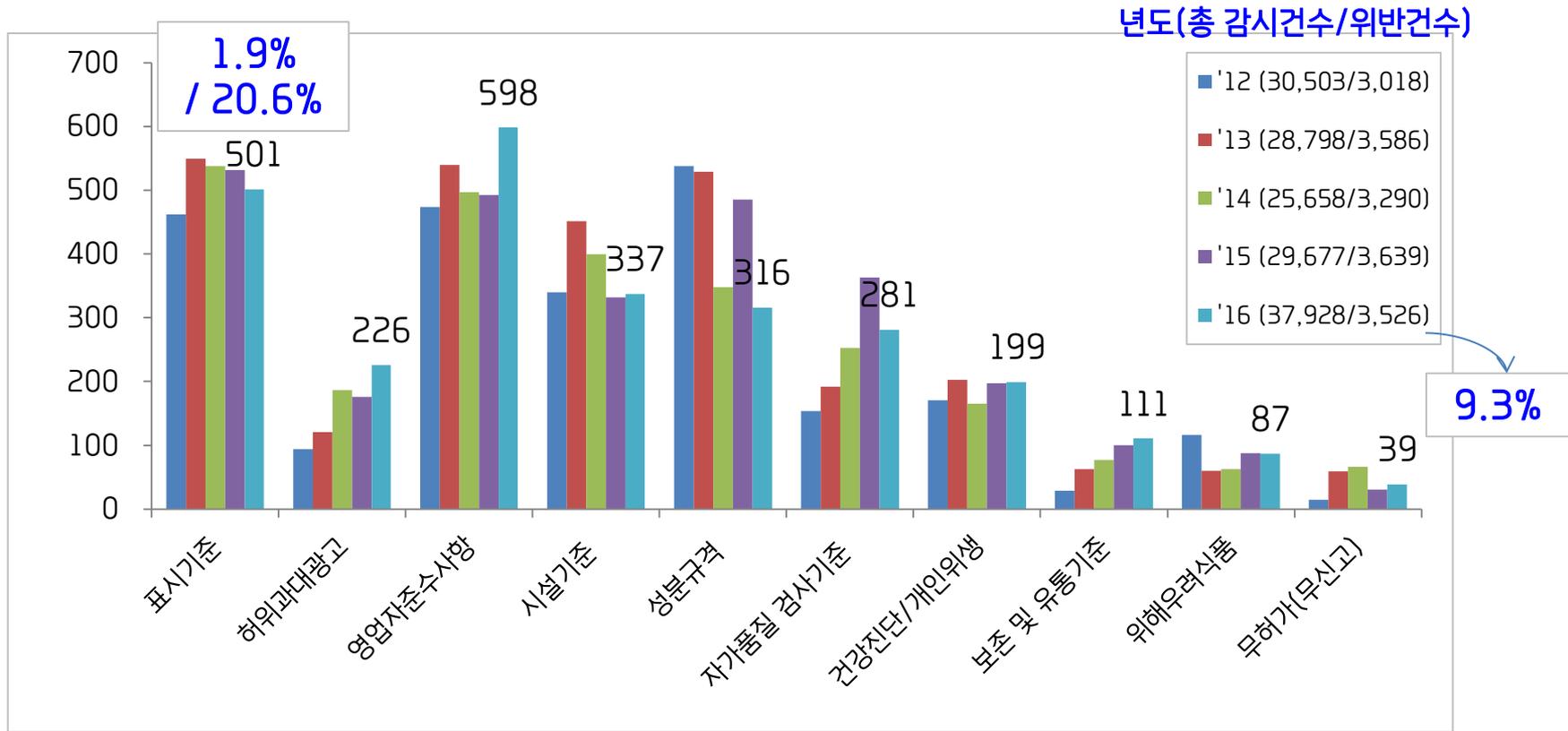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연간 단속 계획

월	점검명	대상	점검기간
10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점검(2차)	약령시장 내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체	10.01 ~ 10.05
	○ 과실주, 리큐르 제조업체 점검		10.15 ~ 10.19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	10.15 ~ 10.19
	○ 수산물 양식장 및 유통판매업체 등 점검(2차)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양식장 및 판매업체	10.15 ~ 10.23
	○ 자가품질검사 자체실시 건기제조업체 점검(2차)	인삼, 홍삼, 비타민 등	10.22 ~ 10.26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3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0.22 ~ 10.26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10.22 ~ 10.30
11	○ 군납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4차)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11.05 ~ 11.09
	○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2차)	인터넷 등 판매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	11.07 ~ 11.09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2차)	절임배추, 곶감, 과메기, 멸치 등	11.12 ~ 11.20
	○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 교차점검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	11.19 ~ 11.23
12	○ 소주 제조업체 점검		12.03 ~ 12.07
	○ 성탄절 및 연말연시 합동 점검	빵류(케이크), 떡류,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	12.10 ~ 12.14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	12.26 ~ 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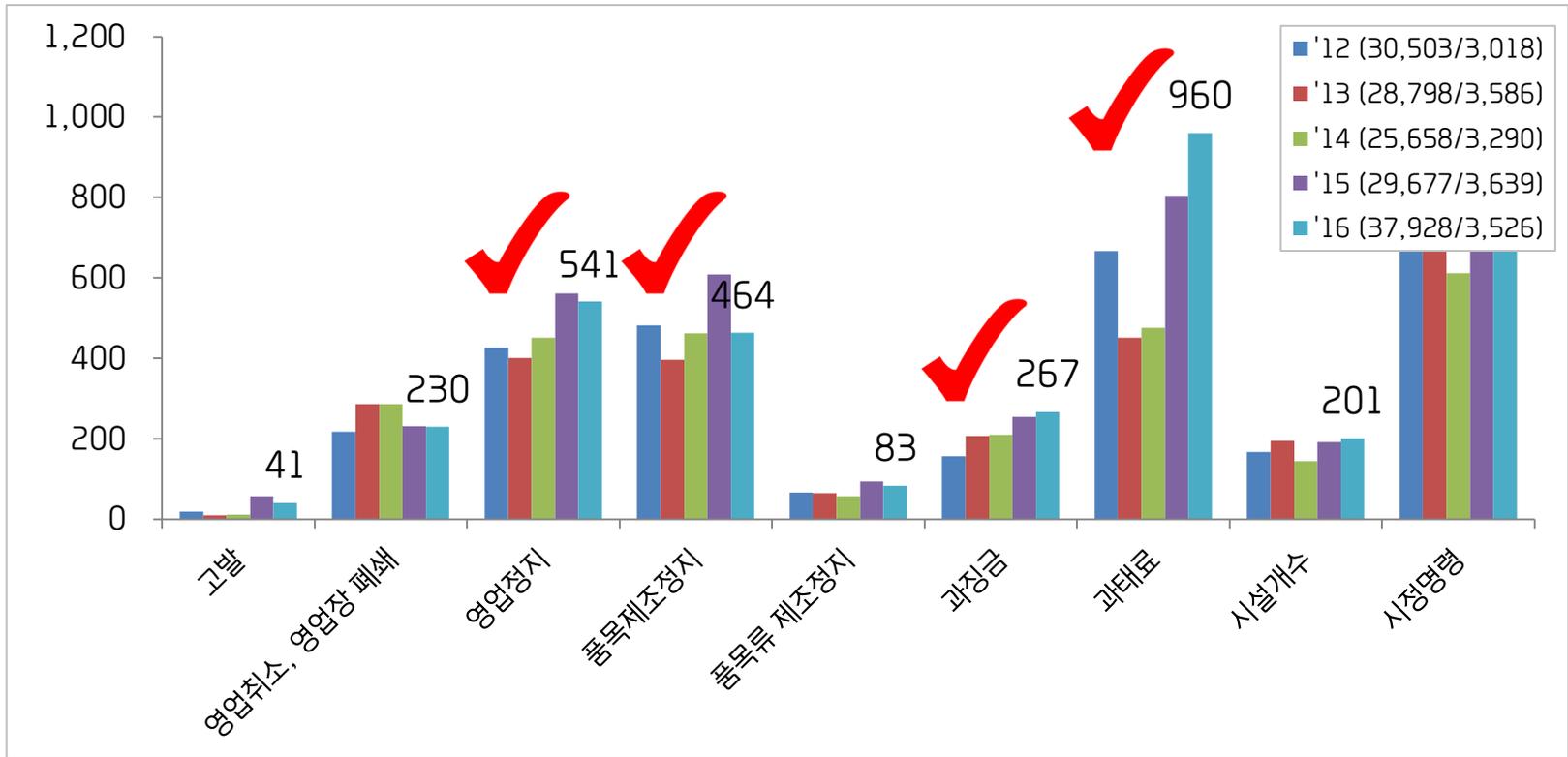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단속 결과 추이 \_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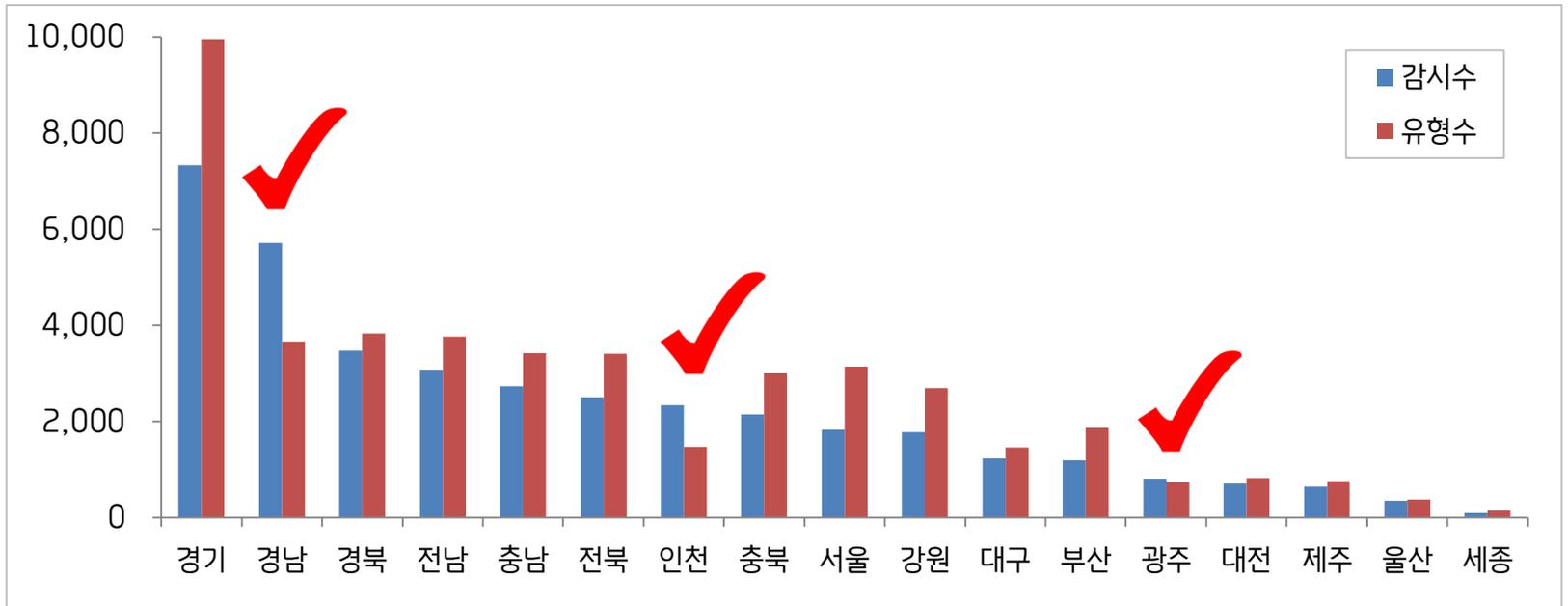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단속 결과 추이 \_ 제조업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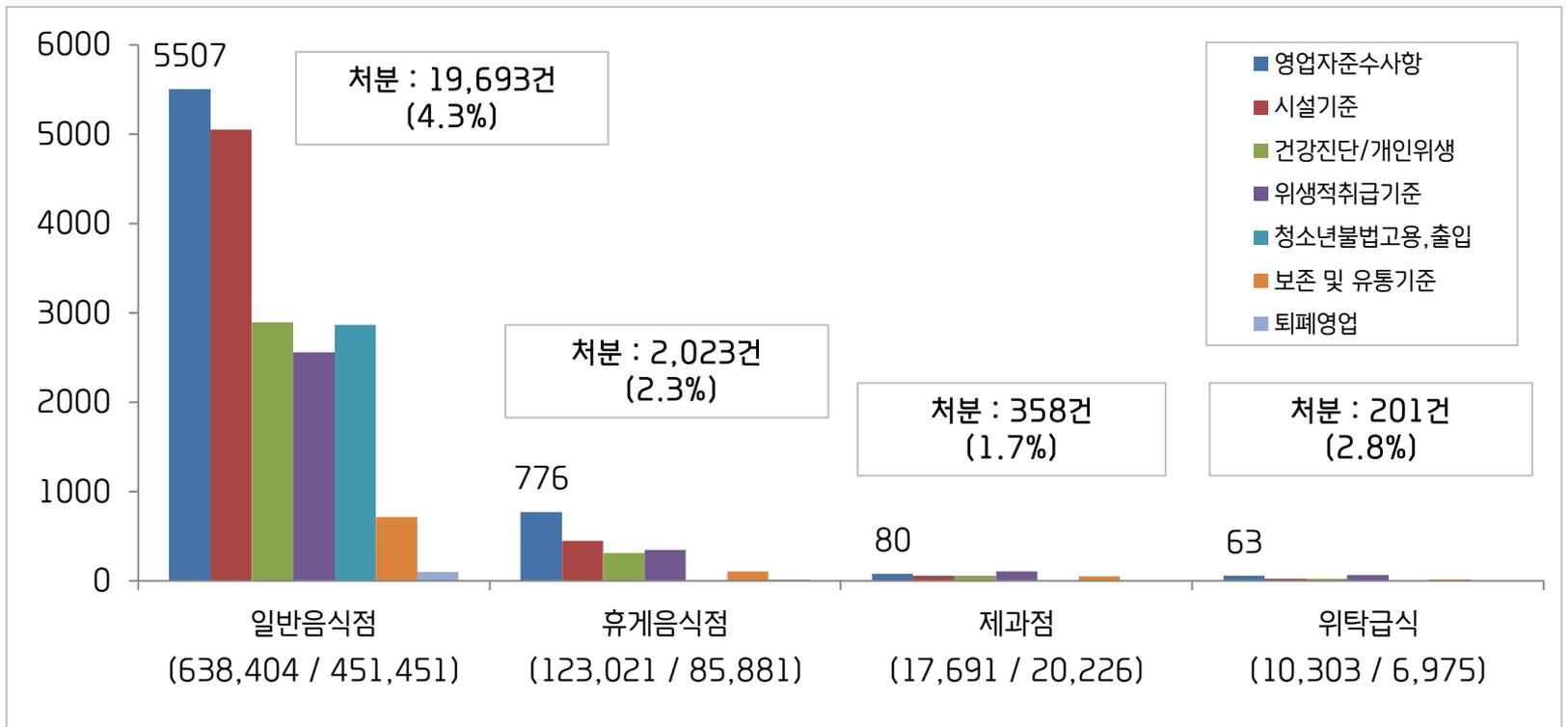
## 단속 결과 추이 \_ 제조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형수('16)	3,131	1,870	1,453	1,474	734	818	380	151	9,954	2,688	2,994	3,421	3,401	3,757	3,821	3,663	760
감시수('16)	1,830	1,190	1,231	2,339	807	710	346	97	7,328	1,777	2,144	2,733	2,500	3,069	3,474	5,715	638
비율(%)	58.4	63.6	84.7	158.6	109.9	86.7	91.0	64.2	73.6	66.1	71.6	79.8	73.5	81.6	90.9	156.0	83.9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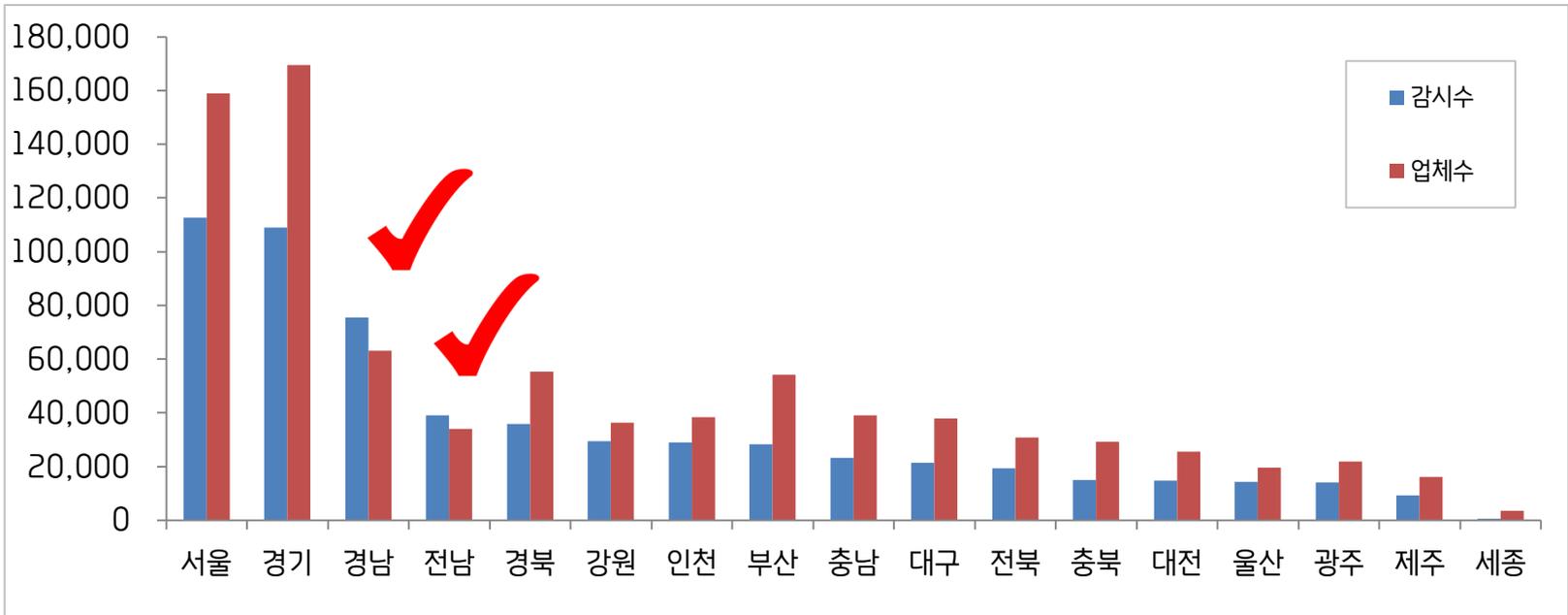
## 단속 결과 추이 \_接客업



(총 업체/단속 수)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단속 결과 추이 \_接客업



구분	지역별 감시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업체수	158,904	54,103	37,963	38,255	21,834	25,422	19,475	3,546	169,413	36,234	29,241	39,087	30,754	34,077	55,426	63,200	16,026	
감시수	112,630	28,282	21,330	28,887	14,018	14,750	14,324	437	108,874	29,367	15,005	23,275	19,259	39,135	35,734	75,391	9,342	
비율(%)	70.8	52.2	56.1	75.5	64.2	58.0	73.5	12.3	64.2	81.0	51.3	59.5	49.2	114.8	64.4	119.2	58.2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주요 단속 결과

### [ 설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점검 ]

- 일정 : '18.1.25 ~ 2.2
- 대상 : 한과류 등 / 식육세트 등 축산물 /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년도	'17	'16	'15
점검 업체수	3,120	3,844	5,165
건강진단 미실시	49	47	3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3	30	3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6	25	27
표시기준 위반	18	22	35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1	-	33
시설기준 위반	7	26	2
보존기준 위반	3	24	10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	-
무등록.무신고 영업	-	-	3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	-	29
기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1	43	62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발렌타인데이 대비 점검 ]

- 일정 : '18.2.5 ~ 2.9
- 대상 : 초콜릿, 과자류(캔디류) 등 제조.소분.판매

년도	'17	'16	'15
점검 업체수	2,692	126	123
시설기준 위반	19	1	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	2	4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	4	5
건강진단 미실시	13	1	2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8	1	-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7	-	-
표시기준 위반	4	2	1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	-	7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봄 신학기 대비 합동점검 ]

- 일정 : '18.3.2 ~ 3.12
- 대상 : 학교급식.매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 대형식재료 판매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

년도	'17	'16	'15
점검 업체수	9,100	7,939	7,725
시설기준 위반	26	23	23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10	27	2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	18	9
건강진단 미실시	2	3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	-	-
표시기준 위반	-	6	5
기타 (기타 : 보존식 미보관, 수질검사 부적합, 거래내역 미보관 등)	7	9	13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합동 교차점검 ]

- 일정 : '18.4.2 ~ 4.6 / 10.15 ~ 10.19
- 대상 : 도시락,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제조.판매업체

구분 / 년도	접객업		제조업	
	'17	'17	'16	'15
점검 업체수	3,528	82	648	5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	7	9	21
건강진단 미실시	12	-	9	8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7	-	8	5
시설기준 위반	7	-	7	1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2	-	-
보존기준 위반	-	1	-	-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	1	-	-
표시기준 위반	-	-	5	1
기타	-	24	-	-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추석 대비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 점검 ]

- 일정 : '18.9.3 ~ 9.11
- 대상 :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생선 등 제수용품) 제조.판매

구분	'17	'16	'15
점검 업체수	3,029	2,537	2,847
무등록.무신고 영업	-	-	1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	-	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	54	43
건강진단 미실시	32	29	27
표시기준 위반	16	12	1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16	6	10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	20	7
보존기준 위반	6	3	8
시설기준 위반	1	7	7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위생교육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4	40	47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

- 일정 : '18.11.19 ~ 11.23
- 대상 :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식품제조.판매업체

년도	'17	'16	'15
점검 업체수	1,826	2,543	3,477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	31	20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	19	-
건강진단 미실시	22	35	30
표시기준 위반	20	-	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	12	12
시설기준 위반	6	21	20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6	-	-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5	5	3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26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	-	1
보존기준 위반	-	3	-
수질검사 미실시	-	-	2
기타	-	5	-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합동 점검 ]

- 일정 : '18.12.10 ~ 12.14
- 대상 : 빵류(케이크), 떡류, 초콜릿류 등 제조.판매업체

구분	'17	'15
점검 업체수	1,427	250
건강진단 미실시	16	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	17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7	7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3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6
시설기준 위반	-	3
표시기준 위반	-	3
보관기준 위반	-	2
품목제조 미보고	-	1
기타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시설 멸실 등)	9	3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세부 단속 결과

###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점검 ]

- 일정 : '18.12.26 ~ 12.28
- 대상 : 스키장, 눈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조리.판매업체

구분	'17	'16	'15
점검 업체수	392	632	129
무신고영업	10	-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20	1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	-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	-	-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	7	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6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	5
표시기준 위반	-	5	-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	-	3
시설기준 위반	-	-	2
보존식미보관	-	-	1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 기본 방향

-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지도·점검
  -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 수출부적합제품(국내 유통 시) 제조·가공업소,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강화
  - 식품위생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사후관리 철저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위생관리 자율관리업소, HACCP인증업소, 별도의 출입·검사 주기 또는 면제 등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특별관리업체 지정
  - ① 식품위생법을 연 2회 이상, 최근 3년간 5회이상 위반 업체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제외(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 식품 등에 이물 혼입으로 위반된 경우 동일 제품에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한정
  - ② 사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를 한 업체
  - ③ 위해식품을 성실히 회수하지 않은 업체(회수실적 80%미만)
- 특별관리업체 관리방법
  - 지정일로 3개월 이내에 종전 위반사항 등 특별점검 실시

-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 Group 2 분기별, Group 3 반기별 특별 점검하되, 특정시기(명절 등) 특정품목(선물용 제품 등) 집중관리(연중)
  - Group 1은 영업재개 여부 지속 모니터링 후 특별점검

구분	위반내용
Group 1	가.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 나. 병든 동물고기 등 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라. 유독기구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바.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사용 사.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위반조 아.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 자.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차. 회수·폐기하지 않고 회수·폐기한 것으로 속임 카. 식품에 이물(납, 얼음, 안천, 물 등)혼입, 냉동수산물에 얼음막 생성 등 내용량 변조 타. 사료용, 공업용 비식용 원료를 원료로 사용 파. 가축·식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경우
Group 2	가. 부적합 처분되어 반송·반출된 수입식품 등 재수입 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다.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라. 원산지 둔갑, 함량·등급 기만, 위장 수입·밀수 등 부당 이득 목적의 소비자 기만적 처벌(언론 보도)된 경우
Group 3	가. 유해 화학물질 사용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나. 수입신고 허위서류 제출 다. 수입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 라. 품목제조 정지 기간 중 제조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기본 방향

- 형식적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위반업체 등 문제업체는 지속적으로 반복 지도·점검
- 아산화질소,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 용도 외 다른 목적(흥미, 재미, 흡입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근절
-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목탄(숯)은 규격품을 사용토록 조치
- 위반이력, 다중이용, 위생취약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다중이용 : 고속도로휴게소, 기차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대형뷔페, 패스트푸드
  - 위생취약 : 배달전문음식점, 제사음식, 장례음식, 애견·동물카페
  - 특정계층 :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키즈카페, 룸카페,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
- 행정사항
  -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재점검
  - 재 적발 시 특별관리
  - 식품접객업소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경찰 등 사법당국 고발

### 중점 지도·점검사항

-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 음료, 생맥주 등의 공급 배관 위생관리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 활어 취급 횡집 등 수족관에 허용된 첨가물 외의 물질 사용여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부, 수족관물 교체 주기(주1회 이상) 및 청결 여부
-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 액체질소(식품첨가물)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섭취하는 최종 음식에 액체질소가 남아있는지 여부
- 아산화질소를 첨가물 사용 목적(충전, 분사 등) 외 사용 여부
- 숯불구이 음식의 목탄(숯)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규격품을 사용.유도
- 식품첨가물 사용 시,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 정해진 용도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중점 관리
- 액체질소, 빙초산, 드라이아이스 등 접촉 시 위해우려 식품첨가물의 취급주의 집중 점검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비의무 업소는 자율적으로 표시 유도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1)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을 제외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 하는 경우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뚜껑이, 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담아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 (2)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 기본 방향

- 취약분야를 선별하여 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항목 위주로 집중 점검
- 식품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신고 식품 판매 행위 점검
- 시기별 다소비식품, 집단급식용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및 지역별 특산식품 등 유통·판매 업체 관리 강화
- 특이사항
  - 무허가(무신고)제품, 무표시 제품,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첨가 위해제품, 무신고 소분 제품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
  -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 또는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에 불시 출장하여 원료구입 및 제조공정 등 전반에 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재 조치

### 허위·과대광고 관리

- 인터넷, 방송(지역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민원신고 제품, 불법 유통 제품 등 중점 모니터링
  - `17년 주요 이슈 품목 : 유황(보스웰리아), 톳 환, 석창포, 백수오,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판매제품,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식품을 ‘영유아 식품’으로 표방, 한약재 처방명칭사용 제품 등
- 방송, 인터넷, 신문(무가지 포함) 등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과대광고 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 처벌 강화

유형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1호*) 위반</li> <li>*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li> </ul>	<b>(1차 위반)</b> ○ 영업정지(제75조)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제94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 위반</li> </ul>	<b>(2차 위반)</b> ○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제75조, 제76조) ○ 과징금(제83조)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제94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5조)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 등 수거.검사

-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 강화
  - 가정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 식품 수거검사 강화
  - 유통 벌꿀 중 항생제, 단순처리 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중 잔류농약 등 위해우려 항
- 도매.전통시장.국도변 슈퍼 등 유통식품, 대형 식품 판매점.백화점 PB(자체브랜드)제품,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판매제품 등 수거검사 강화
  - 백수오 분말.환 제품은 전국 약령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국내 제조.가공식품 중 농.축.수산물 원료 함량이 높은 식품의 입고된 원료에 대한 위해우려 성분 검사 강화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조리식품 및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검사 강화
- 유통 벌꿀 항생제 등 위해우려 성분 수거.검사
  - 국내 제조.소분 벌꿀, 단순처리농산물로 제조된 다류 등
  - 검사항목 : 항생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 전년도('16.10~'17.9) 회수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동일 품목류 출고 전 제품
  - 회수 사유가 된 부적합 항목
-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배달앱(도시락, 족발 등), 온라인(건강표방제품 분말.환 등)
  - 검사항목 : 유형별 개별 규격(공통규격 포함), 식중독균 등
- 냉면, 콩국수 등 하절기 다소비 조리식품, 봄.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리식품 등
  - 검사항목 : 대장균, 식중독균 등
- 카페인 함유원료(녹차, 홍차, 과라나, 커피원두, 코코아콩, 콜라나무열매 등)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료류, 커피(액상), 다류 등 액체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카페인을 첨가한 탄산음료
  - 검사항목 : 카페인
  - 함량 검사결과 0.015% 초과한 경우 부적합 조치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유통식품 등 안전관리

###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대상 매체

주무 부처	일간지 (경제지 포함)	인터넷 (포털사, 쇼핑물, 소셜커머스 등)		방송매체 (홈쇼핑)	잡지
식약처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일간스포츠,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내일신문, 문화일보, 스포츠동아,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스포츠경제, 한국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포털사	네이버, 다음, 구글, 줌	현대홈쇼핑, CJ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여성동아, 여성조선, 쿼, 메종, 헬스조선, 맘&앙팡, 쿠키, 우먼센스, 베스트베이비, 베이비, 앙쥬플러스
		쇼핑물	홈플러스 주식회사, (주)이마트, 롯데마트mall, NH채움몰, (주)현대홈쇼핑, (주)CJ홈쇼핑, (주)GS홈쇼핑(GS샵), (주)NS홈쇼핑, 롯데홈쇼핑(롯데몰), (주)롯데닷컴, (주)홈&쇼핑, 공영홈쇼핑, (주)신세계, (주)이랜드리테일(뉴코아), (주)AK인터넷쇼핑물		
		소셜커머스	(주)포워드벤처스(쿠팡),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오픈마켓	(주)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SK플래닛(주)(11번가), 주식회사인터파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스토어팜)		
	기타	팟캐스트			
지자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부산), 광주일보,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일보(대구), 부산일보, 영남일보(광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중도일보(대전), 중부매일(충북), 중부일보(경기수원), 제주일보, 충청투데이(대전), 한라일보(제주), 매일신문(대구), 한경비즈니스(서울) 등				

# “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

## 행정처분 차수 적용 지침



-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중 같은 위반사항의 재 적발기간(① ~ ③)에 따른 행정처분
  - ①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동일 건으로 처리
  - ②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2분의 1씩 더해서 처분
  - ③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차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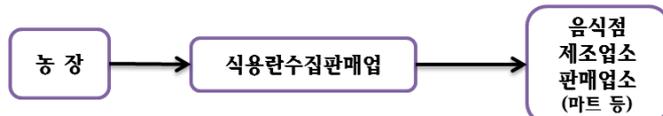
# “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

##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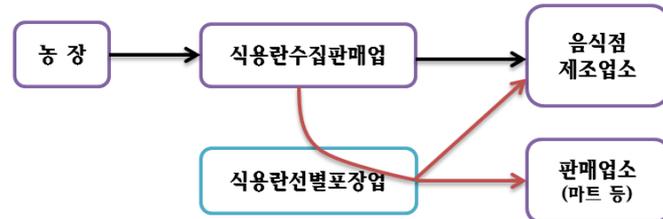
###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집중 단속
  -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업종외 영업 행위 단속
  - 관할 내 유통. 판매되는 식용란 제품에 표시된 영업자 정보(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상 영업자의 제품 여부 확인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후 계란 유통도

(현행)



(개정)



- 식용란선별포장업(신설) 점검 사항
  - 시설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식용란수집판매업 점검 사항
  - ① 수집 및 판매.폐기 기록관리 점검
    -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② 판매용 계란 안전관리 점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식품원료 기준 1)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한 식용에 부적합 알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하는 행위
    - 식용란수집판매업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식용란 검사 여부
  - ③ 판매용 계란 표시 및 광고 점검
    - 난각표시 및 포장지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돈시키는 제품명 사용 및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 최소 포장단위에 산란일이 동일하지 않은 식용란으로 포장하는 행위

# “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

##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 계란(식용란) 안전관리

- 영업자 중점 지도사항
  - 식용으로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원료알로 사용이 부적합한 알은 즉시 폐기용으로 표시된 폐기용기에 담아 색소와 섞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실금란은 정상란과 달리 견고하지 못해 쉽게 난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소비 자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신속하게 공급
  - 계란을 농장에서 수집하여 포장·표시하기 전에 반드시 선별과정을 거쳐 유통 할 수 없는 알을 제거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수집하는 계란이 휴약기간을 준수한 닭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류위반 계란 유통 방지
  - 난각의 최종 표시 의무와 책임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임
  - 계란과 관련 없는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금지 (사실과 다른 사육환경, 사육방법 등)
  - 계란을 세척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즉시 건조하여 냉장으로 보관.유통. 판매하고 포장에 '냉장보관'을 반드시 표시
    - \* 세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냉소(0 ~ 15℃)에 보관 권장

### 포장육 안전 관리

- 영업장 위생관리 점검
  - 원료의 건전성, 가공전 원료 취급상태, 가공 작업장의 청결유지, 주기적 소독상태, 가공작업실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 중점 점검 사항
  -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 원료의 구비요건을 위반하여 부적정 원료 사용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재포장하는 행위
  - 작업실(15℃ 이하), 원료육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제품 보관실(냉장 0~10℃이하, 냉동 -18℃이하)
  - 식육제품의 등급 및 인증(할랄, 안전관리인증기준) 등 허위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관련 허위·초과표시(미표시 행위 포함)
  - 폐기대상 축산물의 부적정 보관 행위(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운용행위
- 제품표시사항 관리 :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등

# “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

## 축산물 위생감시 중점 추진사항

### ❖ 원료 등 배합비율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분류 유형

분류기준	식품 유형	축산물 유형
유고형분, 유지방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빙과</li> <li>-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li> <li>- 무지유고형분 2%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li> <li>- 원유,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혼합 하여 냉동</li> <li>- 무지유고형분 2%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li> <li>- 분리대두단백 또는 단백질함유식품이 주원료</li> <li>- 분말상 : 유성분 60% 미만</li> <li>- 액상 : 유성분 9.0%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li> <li>- 원유 또는 유가공품이 주원료</li> <li>- 분말상 : 유성분 60.0% 이상</li> <li>- 액상 : 유성분 9.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조치즈, 기타가공품 등</li> <li>-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치즈</li> <li>-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한 것</li> <li>▪가공치즈</li> <li>-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효음료류 등</li> <li>- 무지유고형분 3% 미만 발효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효유류</li> <li>- 무지유고형분 3% 이상</li> </ul>
알내용물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함유가공품</li> <li>- 알 내용물 80~90% 이하의 액란, 난분 제품</li> <li>- 알가열제품 중 알 내용물 30% 이하</li> <li>※ 기타 동물성가공식품</li> <li>-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제외한 동물의 알(거위알, 타조알 등)을 가공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가공품</li> <li>-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가공한 것</li> <li>- 알 내용물 80~90% 이상의 액란, 난분 제품</li> <li>- 알가열제품 중 알내용물 30% 이상</li> </ul>

분류기준	식품 유형	축산물 유형
유 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함유가공품</li> <li>- 식육 함량 75% 미만 햄류 제품</li> <li>- 식육 함량 70% 미만 소시지류 제품</li> <li>- 식육 함량 85% 미만 건조저장육류 제품</li> <li>- 식육 함량 60% 미만 양념육 제품</li> <li>- 식육 함량 50% 미만 분쇄가공육제품</li> <li>※ 기타 동물성가공식품</li> <li>-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li> <li>* 타조, 뉴트리아, 오소리, 개구리, 달팽이, 메뚜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햄류</li> <li>- 식육(「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포함)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li> <li>*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 (13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시지류</li> <li>- 식육함량 70% 이상</li> <li>▪건조저장육류</li> <li>- 식육함량 85% 이상 건조 (육포 등)</li> <li>▪양념육</li> <li>- 식육함량 60% 이상</li> <li>▪분쇄가공육제품</li> <li>- 식육함량 50% 이상(햄버거 패티, 미트볼, 돈가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출가공식품</li> <li>- 식육동물성소재(축산물 제외)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육추출가공품</li> <li>- 식육 추출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식육 또는 기타알</li> <li>-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육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성 원료 100% 제품</li> <li>* 기타알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식용란(닭, 오리, 메추리의 알)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의 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장육</li> <li>- 식육함량 100%</li> </ul>

# “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

## 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

### 기본 방향

-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장기간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과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를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등과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운영
- 위생취약지역인 도매시장, 전통시장, 국도변 슈퍼 등 유통 수입 식품등 수거 검사 강화
- 수입식품 등 특별(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유통단계에서 최근 4년간 부적합품목 및 항목
  - 최근 3년간 사용금지 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 중점 검사항목: 최근 '14~17.9.부적합 품목 및 항목
- 허위 과대광고 관리
  -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인터넷(포털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개인판매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
  - 기획 모니터링(설.추석)시 TV 홈쇼핑 추가 모니터링

- 수입식품 업체 주요 점검 내용
  - ① 불법 수입식품등 취급·판매행위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수입식품등 판매행위 등
    - 수입식품등의 용도(불법판매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용 등)외 판매여부
  - ②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등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 : 질병치료 표방 허위·과대광고 식품은 관련 위해성분 함유 여부 수거검사 실시
  - ③ 유통관리 적정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행위
    - 부패·변질식품 보관행위
    - 냉장·냉동제품 등의 적정 보존·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온도계 등 활용)
  - ④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식품 지속관리
    - 신맛 캔디 주의문구표시,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의 흡입용도 판매행위 등

# “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

## 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

### ❖ 수입식품 등 유통단계 부적합 현황

구분	부적합 품목('14 ~ '17.9)	부적합 항목
농산물 (44건 품목)	목이버섯, 고사리, 토란, 천마, 구기자, 바나나, 농이버섯, 마늘쫘, 도라지, 그라비올라, 고구마줄기, 키위, 생강, 당귀, 표고버섯, 숙지황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 이프로디온, 싸이퍼메트린), 중금속(납, 카드뮴), 이산화황, 방사능(세슘(134Cs + 137Cs)), 벤조피렌
수산물 (63건)	미꾸라지, 붕어, 바지락, 주꾸미, 낙지, 새우, 해파리, 한치, 새꼬막, 다슬기, 갯가재, 동자개	잔류농약(프로메트린), 동물용의약품(퀴놀론계), 중금속(납, 카드뮴), 금지물질(니트로퓨란대사물질), 유해미생물(대장균군), 내용량
축산물 (18건)	닭고기, 알가공품, 건조저장육류, 아이스크림, 식육추출가공품, 반경성가공치즈	동물용의약품, 아질산이온,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살모넬라, 니트로퓨란
건강기능식품 (33건)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루테인, 프로폴리스, 옥타코사놀, 키토산	세설팜칼륨, 프로바이오틱스 수, 잔류용매, 대장균군, 함량
수입식품 등 (122건)	과자류, 기타 식품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잼류, 식용유지류, 다류, 장류, 곡류가공품	농약, 허용외 타르색소, 대장균, 세균수, 산가, 보존료, 이물, 중금속, 이산화황 등

# “ 수입 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

## 수입식품 등의 수거.검사

### ❖ 수입식품 등 유통단계 특별관리대상 품목 현황

구분	대상 품목	검사항목
농산물 (24개 품목)	목이버섯, 고사리, 토란, 천마, 구기자, 능이버섯, 바나나, 마늘쫑, 도라지, 그라비올라, 고구마줄기, 키위, 생강, 당귀, 표고버섯, 숙지황, 땅콩, 피스타치오, 참깨, 피망, 헤이즐넛, 무화과, 살구, 석류	잔류농약, 이산화황,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수산물 (33개 품목 / 22개 항목)	장어(먹장어), 냉동조기(부세), 활미꾸라지, 냉동틸라피아(F, 포장횡감), 냉장돔(황돔), 활동자개, 냉동가물치(사두가물치), 냉동낙지, 냉동메기(PANGASIUS 메기, F, 포장횡감), 냉동상어(진환도상어, F), 마른다랑어(가다랑어, 훈제), 냉동다랑어(눈다랑어, 참다랑어), 냉동드렁허리, 냉동복어(검복), 냉동새치(황새치, F, 횡감), 마른고등어(훈제), 마른물치다래(훈제), 활붕어, 활장어(뱀장어), 냉동갈치, 황다랑어, 활꼬막(새꼬막), 활재첩, 가리비(활. 냉동), 활백합(비너스백합, 아담스백합), 냉동새우(민물새우), 냉동새우(흰다리새우),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 홍다리얼룩새우, 적새우), 냉동게(꽃게, 톱날꽃게), 활게(참게), 냉동문어(자숙, S, 포장횡감), 낙지(활. 냉장. 냉동), 오징어, 굴, 청새리상어	중금속(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동물용의약품(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트리메토프림), 니트로퓨란, 말라카이트그린(MG), 클로람페니콜, 유해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기타(복어독, 벤조피렌, 일산화탄소, 히스타민, 이산화황, 색소, 내용량)
축산물	계란, 닭고기, 알가공품(난백분, 난황액, 전란액 등), 건조저장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아이스크림, 훈제식육 및 그 가공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피프로닐 및 그 대사물질, 벤조피렌, 대장균수,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아질산이온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무기질,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추출물, 비타민/루테인, 비타민/코엔자임 Q10, 아세틸글루코사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대장균군, 프로바이오틱스 수, 아세틸팜칼륨, 부정유해물질, 아연, 잔류용매, 봉해도, 함량 등
수입식품 등	김치류, 식용유지류, 다류, 기타식품류, 건포류, 조미식품, 기타가공품,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음료류, 곡류가공품, 향신료가공품, 절임식품, 식용유지류, 당류가공품, 장류, 초콜릿류, 벌꿀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미생물, 허용외 타르색소, 이물, 이산화황, 산가, 벤조피렌, 잔류농약, 보존료 등

#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수입단계 안전관리

#### • 표시대상 여부 판단

##### ① 표시대상 유전자변형식품등 여부확인

-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
-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구비 필요
-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한 시험·검사성적서 인정

##### ② 상기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

- 간장, 식용유,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등) 제외

##### ③ 표시대상이 아닌 원재료 성분

-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의 용도인 성분

#### • 미표시된 유전자변형식품등 관리

- ① 표시면제 증명서류 확인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처리
  - ②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초과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또는 반려 조치
    - 가공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③ 무작위 표본 검사
-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농산물은 반드시 정성검사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된 경우, 정량검사까지 실시하여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3%를 초과한 경우 표시보완 또는 반려
  - 가공식품등은 표시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농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방법
  - 가급적 농산물 전문판매장, 직거래장터, 재래시장 등에서 실시
  - 원산지,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료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 해당 원료는 간이 수거검사 실시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강조표시 및 유사 표시는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조사 또는 수거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처분 등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점 관리 대상
  - 유전자변형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표시관리대상 원료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등) 제조·가공업체 등 : 품목제조보고상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대상 원료사용이 많은 업체 등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용 원료(유전자변형) 사용업체
  - 집단급식소(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를 제품이거나 업체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를 제품 적정성 여부 확인
  - ①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표시보완 및 행정처분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는 원료확보시 정량검사 실시. 함량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② 표시대상인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미표시된 경우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표시보완 및 행정처분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는 원료확보시 정량검사 실시. 함량 초과 시 관련법(식위법, LMO법)에 따라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폐기 또는 반송
  - ③ Non-GMO 표시 또는 유사표시가 있는 경우 :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 증명서류 확인 :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후 종결. 미입증시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 증명서류 미비치(미구비) : 강조표시 삭제 및 행정처분,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 증명서류 미비(허위표시 여부, 진위확인 등) : 반드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GM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 표시삭제 및 행정처분
  - ④ Non-GMO 유사 표시
    - Non-GMO 표시방법 이외 표시는 모두 삭제 및 행정처분

#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 표시면제 증명서류 검토 방법 ]

#### ◆ 구분유통증명서(Identity Preserved Certificate)

- 구분유통증명서 종류 : 개별형, 대행형, 혼합형
- 구분유통증명서 검토 기준
  - (구분관리 적정성)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의 과정에서 혼입이 우려되는 취급단계별 유전자변형식품과의 구분관리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
  - (이력 추적성)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단계 간 해당제품에 대한 구분유통이력의 추적성 여부를 판단
  - (내용의 실질성) 구분관리 사실의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형식과 분량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며, 취급 단계 또는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구분 관리 내용과 서명 등의 확인이 함께 기재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분관리 흐름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판단

#### ◆ 정부증명서(원본)

〈정부증명서〉 생산국의 정부(주립정부 포함)가 발행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당해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구분유통관리(Identity Preserved)된 것임
- 당해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직접 검사하여 검사한 결과(불검출 또는 검사 불능)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불검출 또는 검사 불능)를 인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 당해 제품은 농산물 또는 식품등에 사용된 원재료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하지 않는 국가의 것임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

〈공증된 자가증명서〉 :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변호사가 공증(미국산 가공식품에 한정)

- 구분유통관리 또는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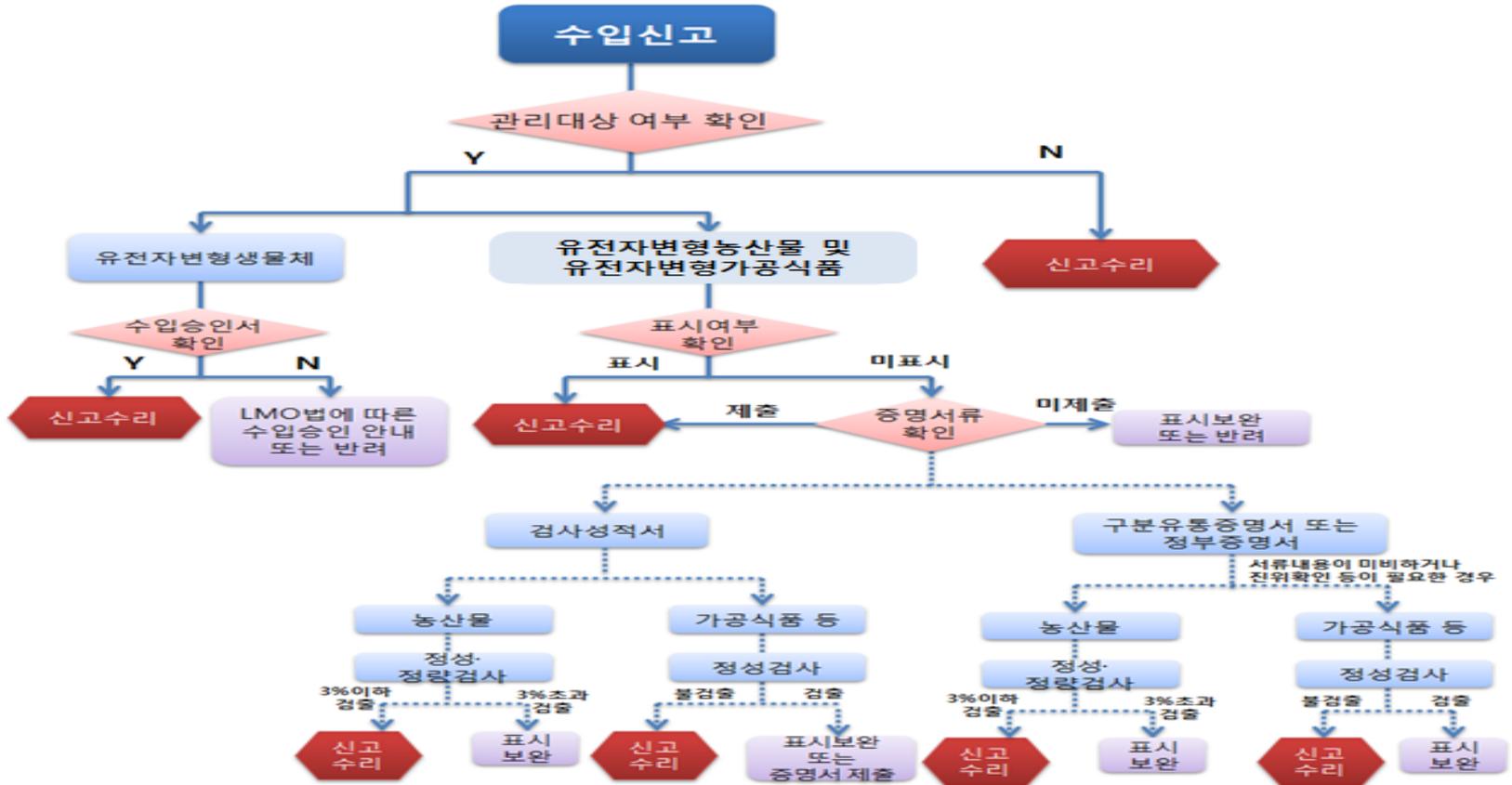
#### ◆ 시험·검사성적서(원본)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에서 직접 검사하고 발행한 국내.외 시험·검사성적서
  - ※ 수입하고자 하는 해당제품을 검사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함
  -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한 시험·검사성적서
-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한 GMO 시험·검사성적서 확인 시 유의사항
  -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GMO 검사 이력을 확인하고, 여러 번 검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검사결과가 한 번이라도 ‘검출’ 판정받은 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표시하도록 조치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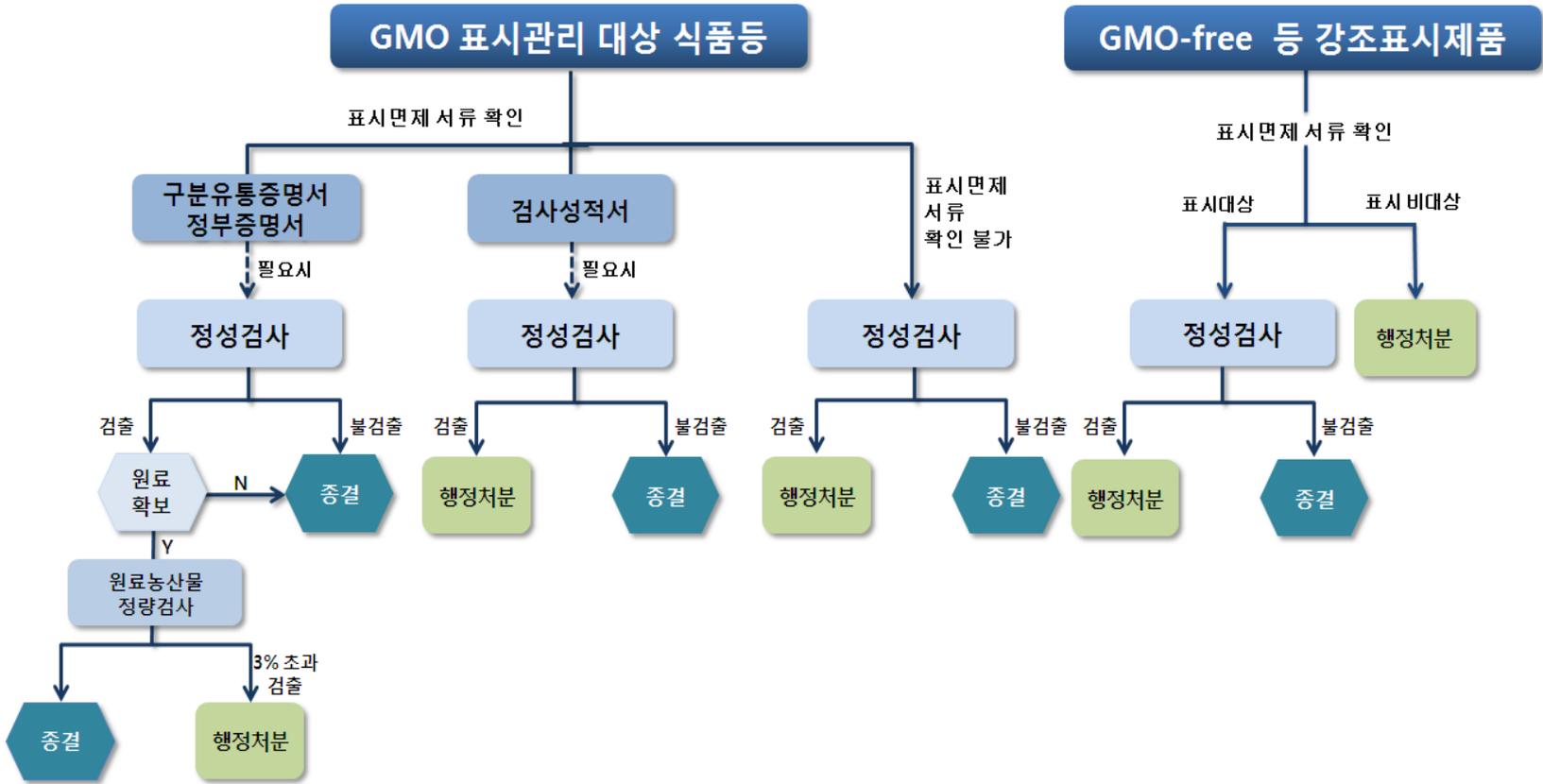
❖ 유전자변형식품 등 수입단계 안전관리



# “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

##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식품 등 제조·유통단계 안전관리





교육 내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